
2020학년도 1학기

장애 대학생 지원 계획

2020년 3월



송의여자대학교
SOONGEUI WOMEN'S COLLEGE

목 차

I. 장애대학생 지원 개요 및 조직체계	3
II. 지원 업무 및 계획	4
III.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9

I. 장애대학생 지원 개요 및 조직체계

1. 개요

- 우리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근거하여 '장애대학생지원센터' 설립함.
- 장애대학생지원센터는 학생처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대학생 활동 지원과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함.
- 장애대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대필, 전문교육 지원인력 지원, 교수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편의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및 진로지원, 취업연계 정보를 제공함.
-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재택수업을 실시하며 모든 장애대학생이 어려움없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2. 조직체계

• 장애대학생지원센터 조직구성

조직 구성	직명 구분	이름	직위	담당 업무
장애대학생 지원센터	센터장	송지선	학생처장	센터업무 총괄
	행정계장	김권철	학생계장	센터 행정업무
	담당자	서진은	직원	센터 행정업무

• 장애대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조직구성

장애대학생 특별지원 위원회	
위원장	센터장(학생처장)
위 원	기획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장애대학생 소속 학과 교수 등 4인
개최시기	정기 회의 연 2회 (필요 시, 수시 개최)
업무사항	장애대학생 지원계획 수립·심의, 교육지원인력 사업 지원 대상자 심의, 장애대학생 관련 정책 수립·논의, 장애대학생의 교육 및 복지, 시설,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Ⅱ. 지원 업무 및 계획

1. 장애대학생 지원 요약

- 1) 장애대학생의 교수학습
 -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 원격수업시 수어통역, 강의교재 제공, 음성지원, 대필지원
 - 그 밖에 장애대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 지원
- 2)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확보 및 지원
- 3) 장애대학생 편의시설 지원
 - 장애대학생 전용 화장실
 - 장애대학생 전용 주차장 (주차증 발급)
 - 장애대학생 전용 열람석(학술정보센터)
 - 장애대학생도서관 (높낮이 조절 책상 배치)
- 4) 장애대학생 진로 및 취업
 - 학사, 생활, 진로 상담
- 5) 장학금 지급
 - 한사랑 장학금(중급, 1-3급)
- 6) 일반 및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 강의 필기, 요약, 대필
 - 실험, 실습 지원
 - 과제 관련 보조지원 (자료제공, 제작 등)
 - 이동 지원
 - 속기, 수화통역, 점역 등 전문교육지원인력 지원

2. 장애대학생 지원 방법

• 학생 선발 절차

- 학기 초, 장애대학생 현황파악 시 교육지원인력 지원 신청 받음. 학생의 장애유형, 지원필요성,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인력 지원 '지원 대상 장애대학생 선정·평가서'를 해당 학과장 또는 담당자가 작성하여 9 점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애정도에 따라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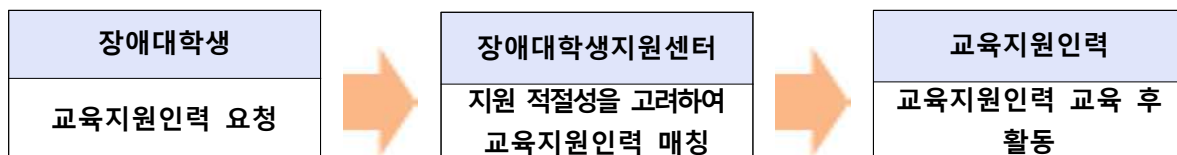
• 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방법

-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칙 제51조의2(장애대학생 지원 등) 및 장애대학생 지원센터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대학생 지원 및 교육지원인력 활동 안내에 관한 내용을 학과 협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또한, 매년 책임지도교수제를 시행하여 장애대학생 상담 시, 장애대학생 지원센터 안내문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교육지원인력(일반, 전문) 선발 및 매칭 절차

• 교육지원인력 선발 및 '장애대학생-교육지원인력' 매칭 절차

- 전문, 일반 교육지원인력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어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학생교육지원인력의 경우 학과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교육지원인력을 선발함. 또한 장애대학생의 요청으로 본인이 매칭하는 경우 담당자 또는 학과장이 직접 교육지원인력 면접을 실시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칭함.



• 지원유형(일반, 전문교육지원인력)에 따른 지원 세부 내용

지원유형	유형	지원내용	활동별 시급	
			일반(근로) 교육지원인력	전문교육지 원인력
일반교육지 원인력 (국가근로 장학생)	수업 의사소통지원	문자 통역	8,590원/1시간	
		수화 통역	8,590원/1시간	
	대필지원	강의 필기, 요약	8,590원/1시간	
		시험 및 각종 평가 대필	8,590원/1시간	

	실험, 실습 지원	실험, 실습	8,590원/1시간	
		컴퓨터 활용	8,590원/1시간	
	수업자료 제작 지원	시각장애 대체자료 제작(텍스트입력 등)	8,590원/A6 장	
	과제관련 보조 지원	자료탐색(서핑)	8,590원/1시간	
			8,590원/1시간	
		자료제작	8,590원/1시간	
	알리미 지원	강의, 특강, 정보 등 각종 신청 알리미	8,590원/3회	
	행사지원	특강, 채플, 학교·학과행사 등	8,590원/1시간	
	이동지원 서비스	강의실 등 교내 각종시설 이동 동행	8,590원/3회	
		차량 연계 (탑승, 안내 등)	8,590원/2회	
전문교육지원인력	장애 유형별 지원	수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자격증소지자)	-	30,000/1시간

※ 기타유형: 그 밖에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예정
 - 매월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점검 내용 공유. 또한 매월 학과 조교 및 담당 직원이 활동 점검 실시.

• 장애대학생 · 교육지원인력 제출 서류

번호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1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학생별 지원신청서	교육지원인력 서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교육지원인력 활동일지
4	장애대학생 증명서 사본	교육지원인력 통장사본
5	장애대학생 서약서	교육지원인력 시간표 (해당자에 한함)
6	지원 사실 확인서	전문교육지원인력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4. 교육지원인력 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은 장애대학생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을 받으며 교육지원인력으로서의 세부지침을 익힘. 또한 수시로 일지를 작성하며 필요 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유형에 따라 추가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함.

일시	장소	교육프로그램	대상	비고
매 학기 초	해당 학과실,	교육지원인력 세부활동 및	일반,	교육지원인

(3월,9월 중)	장애대학생지원 센터	활동보고서 작성법 설명	전문교육지원 인력, 근로학생	력 매칭 후 1:1 설명
3월, 9월 (1회당 120분)	미정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교육지원인력활동안내, 장애 영역별 교육지원인력 역할, 장애체험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전문교육지원 인력, 근로학생	
6월, 12월	미정	교육지원인력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실시	장애대학생 및 교육지원인력	
매 학기 말 (6월, 12월)	미정	장애대학생/교육지원인력 간담회 실시	장애대학생 및 교육지원인력	

- 우리대학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재학생 및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협조문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장애이해 배너를 각 건물 로비에 비치하고 있음.

5. 2020학년도 장애대학생 지원 예산

가. 국고 보조금

구분 유형	재원		비고
	국고지원 80%이하 (월 지원한도금액)	대응투자 20%이상 (월 지급금액)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제)	1,099,520원	274,880원 이상	시급:8,590원
전문 교육지원인력 (시급제 또는 월급제)	1,489,600원	372,400원 이상	

- 1.2차 (3월,9월)에 나누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제출(대학→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대학은 총 사업금액의 20% 이상 대응투자 확보
-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 8,590원,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 ※ 교비 투자를 통해 기준 시급보다 더 높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상한은 월 160시간 (8시간×5일×4주)한도 준수

나. 교비 예산 확보 계획

• 2020학년도 예산서 (학생과)

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교육(교원): 1,000,000 - 장애인식개선교육(직원): 1,000,000 - 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강사료: 1,200,000 -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비: 600,000	3,800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 활동비, 간담회 등: 9,000,000	9,000
장애대학생	- 장애대학생 지원비: 5,000,000 - 교육환경개선: 1,000,000	6,000
합 계		18,800

※ 작년 대비 6,352천원 예산 상향 조정.

※ 우리대학은 위의 예산 외에도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하여 추후 장애대학생이 시설·학습 등의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 할 경우 장애대학생지원센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6. 자체 평가 계획

- 장애대학생 및 교육지원인력학생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등의 평가 실시
 - 장애대학생 및 교육지원인력의 수시 상담 및 만족도 조사(연 2회 실시)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장애대학생 1,2학기 성적 및 수업참여의 성실도를 면밀히 체크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여부 결정에 반영 (교육지원인력 사업 전·후 성과 측정표 서식 사용)
 - 교육지원인력의 활동 평가를 통한 차기 교육지원인력 선발에 반영 : 매월 담당 실무자 회의를 통해 교육지원인력 활동에 대한 점검내용(담당자 수시 활동점검, 장애대학생상담, 타 교육지원인력 신고 등)을 공유하고 매 학기 말 활동 불성실자 및 교육지원인력으로서 활동에 미숙한 자는 차기 교육지원인력 선발에 지양함.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 가. 장애유형, 정도 등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대학생활 지원.
- 나. 장애대학생의 요구가 충족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 보장.
- 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 보호 및 편의제공에 힘쓰고자 함.
- 라.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2. 향후계획

- 가.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해 지속적 지원 방안 개발 및 수립.
- 나.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 자체 점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 발전 계획 수립.
- 다. 장애대학생 지원 내실화를 위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준비 철저.